

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429호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: 2024. 6. 4.

제안자: 도시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적시할 필요성이 없으며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우리 시 다른 조례와 통일하고 감면 요율을 하향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 일반회계 보전에 관한 단서를 삭제함(안 제23조).
-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중 다자녀 가구의 자녀의 수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감면 요율을 하향함(안 제23조제1항제3호의2).

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안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의2 전 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두 자녀 이상이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수용가.

제23조제1항제3호의2 후단 중 “10퍼센트”를 “5퍼센트”로 한다.

『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』

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23조제1항제3호의2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두 자녀 이상이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수용가.

제23조제1항제3호의2 후단 중 “10퍼센트”를 “5퍼센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요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감면) ① (생 략)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3의2. <u>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수용가</u>. 이 경우 사 용료 부과 금액의 <u>10퍼센트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.</p> <p>4. (생 략)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제23조(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3의2. <u>두 자녀 이상이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수용가</u>. ----- <u>5퍼센트</u>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